

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

가. 단계별 · 응시자격별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

단 계	응시자격	제출 서류	제출 방법
교양과정 인정시험 (1단계)	1단계 1과목 이상 합격(면제)한 자 ※2~4단계 합격(면제) 과목이 있는 자 포함	◦제출할 서류 없음	
	◦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	◦졸업증명서 1부	◦등기우편으로 2. 18(금)까지 발송
	◦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	◦합격증명서 1부	◦등기우편으로 2. 18(금)까지 발송
전 공 기 초 과정인정시험 (2단계)	1단계 2과목 이상 합격 또는 1단계 합격과목과 면제과목을 합하여 3과목 이상인 자 ※2~4단계 합격(면제) 과목이 있는 자 포함	◦제출할 서류 없음	
	◦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	◦성적증명서 1부 ※ 35학점 미만인 경우 - 수료증명서 1부	◦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온라인 첨부 가능한 대학은 온라인상에서 첨부 ◦온라인 첨부 불가능 대학은 등기우편으로 5. 6(금)까지 발송
전 공 심 화 과정인정시험 (3단계)	◦2단계 2과목 이상 합격 또는 2단계 4과목 이상 면제 또는 2단계 합격과목과 면제과목을 합하여 4과목 이상인 자 ※3~4단계 합격(면제) 과목이 있는 자 포함	◦제출할 서류 없음	
	◦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 수료(졸업)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	◦성적증명서 1부 ※ 70학점 미만인 경우 - 수료증명서 1부	◦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온라인 첨부 가능한 대학은 온라인상에서 첨부 ◦온라인 첨부 불가능 대학은 등기우편으로 7. 22(금)까지 발송
	◦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	◦제출할 서류 없음	

※응시자격이
지망전공과
동일 전공
인정(학)과
이어야 함

단 계	응시자격	제출 서류	제출 방법
학위취득 종합시험 (4단계) ※ 응시자격이 지망전공과 동 일 전공 인정(학)과 이어야 함	◦1단계(5과목-필수과목 포함) 와 2단계(6과목)와 3단계(6과 목)를 합격(면제)한 자 ※4단계 합격 과목이 있는 자 포함	◦제출할 서류 없음	
	◦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 교에서 3년 이상 수료하였거 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	◦성적증명서 1부 ※ 105학점 미만인 경우 - 수료증명서 1부	◦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온라인 첨부 가능한 대학은 온라인상 에서 첨부 ◦온라인 첨부 불가능 대학은 등기우편으로 10. 14(금)까지 발송
	◦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	◦성적증명서 1부	◦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온라인 첨부 가능한 대학은 온라인상 에서 첨부 ◦온라인 첨부 불가능 대학은 등기우편으로 10. 14(금)까지 발송
◦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105학점(전공 16학점 이 상 포함) 이상을 인정받은 자	◦제출할 서류 없음		

※ '서류 제출 방법'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인 경우

- 응시원서 접수 후 단계별로 지정된 기한 내(**1단계 2. 18(금)자, 2단계 5. 6(금)자, 3단계 7. 22(금)자, 4단계 10. 14(금)자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**)에 발송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수험료는 반환하지 않음 (방문제출 불가, 주소는 접수완료 후 '서류제출용 봉투표지'를 출력하여 확인)
- 서류 도착 확인은 등기우편 발송 4일 후(휴일 제외)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'부속 서류 도착 확인' 클릭 후 조회
- 우편 운송과정에서의 분실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음(등기우편 영수증 별도 보관하기 바람)
- 각종 증명서는 발급 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음

나.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및 과정(과목)면제 신청자 제출 서류

- 1)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: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학력인정확인서(서식 :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참조),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.(외국어 증명서는 한글번역공증서 별도 첨부)
 - 국적이 외국인 경우는 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’ 추가 제출
 -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
 - ※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: 한미교육위원단(미국) 【☎ 02-3275-4011】 , 공자아카데미(중국) 【☎ 02-3452-6775】 , 주한일본대사관(일본) 【☎ 02-2170-5200】
 - ※ ‘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서’ 제출 가능
 - ※ 외국에서 초·중·고를 졸업한 경우, 학력확인을 위해 전 교육기관 졸업 성적증명서, 학력인정확인서 제출해야 함.
- 2) 과정(과목)면제 신청자 [대상자 : 응시요강 별표2~6(p.30~38) 참조]
 - 국가기술자격·면허 취득자 : 해당 자격·면허증 사본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 증명서(대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증명서) 각 1부
 - 국가(지방)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: 합격증명서(복사본 안됨)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(대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증명서) 각 1부
 - 과목면제과정 지정교육기관 이수자 : 이수확인서(복사본 안됨)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(대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증명서) 각 1부
- 3) 서류 제출 방법 : 위 ‘가. 단계별·응시자격별 제출서류 및 서류 제출방법’과 동일함
(지정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 불가)

다. 신체장애자 제출 서류

- 1) 대상자
 - 시각장애 : 눈의 교정시력이 0.04 미만인 자(맹인)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.04 이상 0.3 미만인 자(약시자)
 - 신체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지체 부자유자
- 2) 제출 서류 :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

라. 응시자격 보유자 제출 서류

- 1) 대상자 :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취득 중에 있는 자(기준일 : 시험 시행일)
- 2) 제출 서류
 -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‘가. 단계별·응시자격별 제출 서류 및 서류 제출 방법’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(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 못함)
 - 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완성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